

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15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2. 개정이유

- 자동집하시설 수리·보수 비용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, 지원 제외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에 대한 적격자를 심사하고 자동집하시설 보조금 지원 대상을 심사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)
- 자동집하시설 수리·보수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준,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의2)
- 자동집하시설의 일상적인 유지·보수 등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명확히 규정함(안 제5조의3)

4. 개정조례안 :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의 입법예고란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6년 6월 4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Fax 등

다. 기재내용 : 주소·성명·생년월일·연락 전화번호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(파주시 자원순환과 환경시설팀)

○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-11 명성빌딩 2층 자원순환과 (우 10932)

○ 전화 : 031)940-4771 / Fax 031)940-4739 (전송 후 반드시 전화 확인 필요)

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

□ 자치법규명 :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일부개정규칙안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생 년 월 일 :
-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

➡ 의견제출자 편의고려, 임의서식임(의견제출 관련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필수 기재내용작성 후, 자유롭게 제출)